

제314회 임시회
교 통 위 원 회

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(안) 보고

2022. 9.



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(안) 보고

1. '22년 코로나19 수입결손 보전 공사채 발행 승인 신청(안)

가. 신청근거: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·운영 기준

-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수입결함의 보전

나. 주요내역

- 신청금액: 3,494억원
- 신청사유: '22년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결손 보전
- 차입기간: 10년 이내
- 차입조건: 매 3개월 이자 후급, 만기 시 일시상환

다. '22년 추정 손실액('19년 대비): 3,494억원

- 192,463백만원('22년 1~6월 수입손실액) + 1,322,439천명('19년 7~12월 수송인원) × 18.8%('22년 6월 수송인원 감소율) × 631.3원(1인당 수입손실)
- 1인당 수입손실(631.3원): 192,463백만원('22년 1월~6월 수입손실)/304,858천명('19년 대비 '22년 1월~6월 수송 감소인원) ≒ 0.6313

라. 추진일정

- 시의회 교통위원회 보고('22. 9. 26.)
- 행안부 및 서울시 승인('22. 9월~10월)
- 공사채 발행('22. 11월~12월)

2. 기 발행 공사채 차환 발행 승인 신청(안)

가. 신청근거: 행정안전부 공사채 발행·운영 기준

- 발행대상: 既 발행한 공사채의 차환

나. 기 발행(2018. 6. 18.) 공사채 내역

- 사업명: 부채 원리금 상환
- 발행금액: 3,500억원
- 차입조건: 5년물(금리 2.675%)

※ 상환 도래일 2023. 6. 18.

다. 신규 차환 발행(예정) 공사채 내역

- 신청금액: 3,500억원
- 신청사유: 既 발행한 공사채의 차환
- 차입기간: 10년 이내
- 차입조건: 매 3개월 이자 후급, 만기시 일시상환

라. 추진일정

- 시의회 교통위원회 보고('22. 9. 26.)
- 행안부 및 서울시 승인('22. 10월~'23. 1월)
- 공사채 발행 및 상환('23. 2월~6월)